

# 관리업무 안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관리부 차장 | 오치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거래 주체의 대등성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과는 달리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제법의 하나로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하도급법상 제23조에 의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므로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원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04. 1. 20 공포, 4. 21 시행) △하도급법시행령(04. 4. 19 공포, 4. 21 시행)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등, 기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여러 조합원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법률 제7107호)의 주요 개정내용 [2004년 1월 20일 공포, 4월 21일 시행]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

-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 2) 직접지급절차에 있어 원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3)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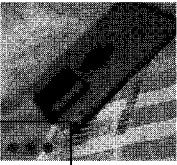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강화

건설공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 □ 하도급법상 지연이율 위임규정의 구체화

위임의 상한을 정하고, 지연이율을 고시하면서 고려할 사항을 명시

-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하도급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1호)의  
주요 개정내용**

[2004년 4월 19일 공포, 4월 21일 시행]

□ **현행 하도급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사유 등이 개정하도급법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해당 조항을 삭제(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 1)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 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그 후에 진행된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은 무효가 되므로 직접지급사유의 발생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수급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한다.
- 2)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
- 3)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에 비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상한으로 한다.
- 4)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 의무위반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규정하면서, 직접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의무위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

□ **시행령별표상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도급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벌점(0.5)을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현장직원 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벌점(1 → 0.5)을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3) 개정내용**

□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율**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위임내용에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하여 지연이율을 현행과 같이 연 25%로 고시. 이는 2003년말 시중은행의 최고연체이자율(연 20%)에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5%p를 가산한 수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가. **규정내용**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①)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②).
  - ②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4조③).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법 제14조④).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14조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4조⑥).
- ⑥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법 제2조⑩).

#### 나. 도입취지

원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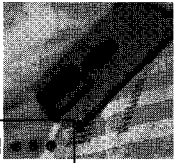
그러나 이처럼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수급사업자가 실제시공을 하고 이에 따른 완성물을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현재의 건설시장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원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처리된 경우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즉, 발주자로서는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기지연이나 부실시공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대형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라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그로부터 하도급 받아 실제 시공을 담당할 수많은 수급사업자로서는 선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 연쇄부도의 위험에 노출된다.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의 방지 및 중소하도급자의



신용경색을 완화를 위하여, 현행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동 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가) 동 조항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나) 여기서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다.

다) 다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 반면,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원사업자에게 지급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자체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어야 하며, 직접 지급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만으로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고 현행법상 직접 지급요처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가) 동 조항은 당사자의의사를 존중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양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셈이 된다.

나) 한편,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3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묵시적·순차적인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의 하도

급대금지급보증제도에 의하여 그 지급이 담보되는바, 원사업자가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발주자에 대해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지급보증제도가 연계되어 상호 보완작용을 하게 되었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직접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다만, 하도급법시행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4)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여기서,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를 의미한다.

라.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 지급제도<참고자료>

1)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예)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는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하며, 나아가 이처럼 무효로 되는 압류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직접지급사유가 가압류등의 송달일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자는 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직접지급사유 발생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예)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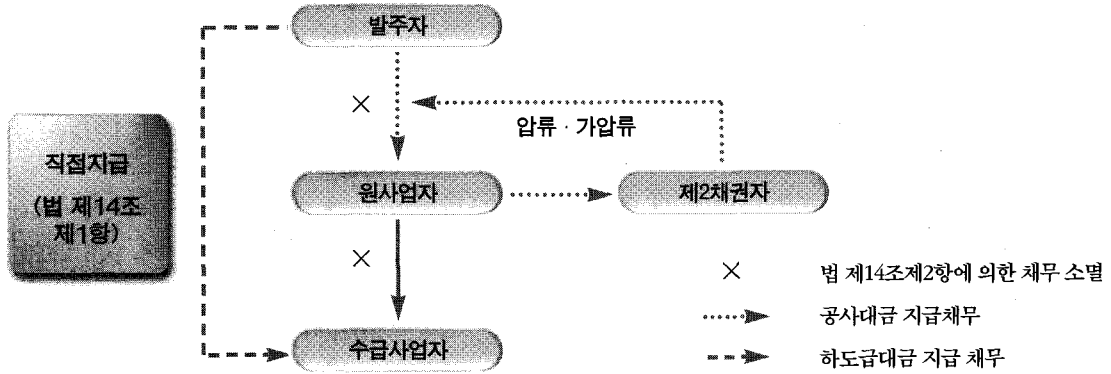
직접 지급사유 발생후의 압류 등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발생전의 압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져 있다.

압류 등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의 처분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 직접 지급제도와 압류의 관계에 대한 도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압류하거나 배당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와 공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동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발주자의 공탁신청은 공탁원인 미비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의 입장>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백한 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최근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지방법원의 결정(2000년 5월 11일 선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이 있었다.

이는 결국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탁>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불측의 피해(이중지급의 위험)를 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공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먼저, 발주자의 과실 없이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고유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수급사업자중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발주자로서는 공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③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아 직접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 공탁한 경우

#### 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

##### 1)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는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곧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를 받아 확인한 다음, 원사업자가 자신과 수급사업자의 시공내역을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기성검사 신청을 하면 발주자가 이를 검사하여 공사물량과 금액을 구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접 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발주자의 직접 지급한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를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 지급하면 된다.

즉,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최대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 할 금액을 범위로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미공제금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인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먼저 상계처리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원사업자)이 부도 등으로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되고, 도급인(발주자)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사. 원사업자의 협조 의무

1)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신설 필요성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로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일정한 협조가 있어야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위한 원사업자의 협조 의무

〈 하도급법 제14조 제5항 〉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 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의 문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의 부담주체를 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의 기본취지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발주자 규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발주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가. 규정내용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3조의2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 다(법 제13조의2②).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법 제13조의2③).

나. 규정취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정 지워지며, 통제 불가능한 위험(예 :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등)외에 통제 가능한 위험(예 : 유동성부족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건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필요 불가결하다.

즉, 건설공사는 장기 계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도의 위험이 없어 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1)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 지급보증에 의한 편익보다 비용(보증수수료)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탈법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공동도급에 의한 하도급에 있어서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 금

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싱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① 동 예외의 취지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수한 원사업자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지급보증 필요 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한편,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정 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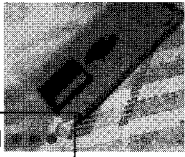
③ 또한, 회사채는 적기상환능력이나 원금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 어음과 달리 장기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설하도급의 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채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면제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투자적격등급은 BBB이상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취지나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보다 한 등급을 상향하여 결정한 것이다.

#####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지급하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② 따라서, 원사업자의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곧 발주자인 관계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지급보증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어도 지급보증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원사업자의 부도시 직불한다는 식의 조건이 직불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건부 합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시점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의 특수성**

- 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내부약정에 의한 연대책임부담 여부는 별개로 하고, 하도급법상으로는 각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간 지분비율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의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면 된다.
- ②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면제대상 업체인 경우에도 잔여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관련문제**

- 1)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게 추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3)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다.
- 5)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하도급법에서 예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다만, 하도급법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다.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가. 규정내용**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①).

-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법 제13조②).
- 3)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③).
-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⑥).

※현재 어음할인율 : 연 7.5%

- 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일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직

불하여야 한다(법 제13조⑦).

※현재 지연이율 : 연 25%

##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 1) 원칙

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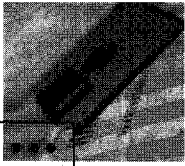
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15일 이전에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먼저 도래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2) 예외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다.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을 강행규정화한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 시점

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고,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의 기준일이 된다.

① 여기서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② 건설위탁에 있어 목적물 인수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나)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 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4) 기간의 계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기간산정의 초일이나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수단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음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1999년 4월 1일 이후의 하도급법 개정으로 중대한 예외를 신설하였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와 『어음만기일유지의무』가 그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라.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1) 어음할인료

어음은 크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환어음의 경우 주로 수출품거래에 있어 지급위탁 증권성을 가지는데 반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약속 증권성을 가진다.

즉,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은 만기까지 신용을 창출하여 지급유예의 혜택을 받게 되나, 어음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만기에 도달하여야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동안의 금융비용 및 지급거절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어음의 경우 발행·교부하는 날의 가치와 어음결제일인 어음 만기일의 경제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어음소지인의 입장에서 만기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금융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어음을 팔아서(어음할인의 법률상의 성격은 어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임) 현금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만기도래전에 어음을 파는 행위를 어음할인이라고 하며, 어음할인을 위하여는 할인 수수료(실제로는 만기까지의 금융비용에 부도위험성을 반영한 위험수수료를 더한 금액)를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의 어음할인비용인 수수료를 어음할인료라 하며, 이는 어음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 2)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부도의 위험성을 전가시키는 한편, 만기까지의 금융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어음할인율의 결정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이 되는 어음할인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어음의 할인율은 발행인에 따라 할인인의 이자율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음할인료 계산에 혼선을 초래하고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음 할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기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억제하고 가능한 현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할인율에 어느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어음 할인율로 고시하여 오고 있다.

####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율 변동 추이〉

	1998년 5월	1999년 1월	2000년 6월	2002년 6월
고시 할인율	17, 19	12.5	9	7.5

- ① 1998년 5월 1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2.5%
- ② 1998년 5월 12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교부된 어음은 연 17%(어음만기 90일 이내) 또는 연 19%(어음만기 90일 초과)의 할인율을 각 적용
- ③ 1999년 1월 1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12.5%의 할인율을 적용
- ④ 2000년 6월 1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9.0%의 할인율을 적용
- ⑤ 2002년 6월 10일 이후 교부된 어음은 연 7.5%의 할인율을 적용

### 4) 어음할인료의 계산

$$\text{어음할인료} = \text{어음지급액수}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지연일수} / 365\text{일}$$

※ 지연일수 계산시,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어음의 발행일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



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본다.

**마. 지연이자 지급의무**

**1) 지연이자**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지연이자는 순수한 이자개념은 아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 지연이자율**

하도급법에 의하면 지연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연이자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이므로, 지연이자율은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비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연이자율은 「선급금등 지연 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2004년 4월 21일 시행)에 의하여 연 25%로 고시하고 있다.

※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율은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이 연25%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이자율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은 연 20%이다.

**3) 지연이자의 계산**

지연이자 = 지연지급하도급대금 × 지연이자율 × 지연일수/365일

**바. 적용기준**

-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 된다.
-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고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가. 규정내용**

- 1) 원사업자는 건설 등을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법 제16조①).
- 2)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②).
- 3) 원사업자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

여야 한다(법 제16조③).

**나. 적용요건**

- ①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아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 조정기준**

원사업자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②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에는 적법하다.
- ③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조정기일**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원사업자는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지연이자는 연25%임)

또한,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기산점은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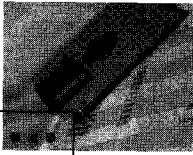
**□기성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가. 규정내용**

- 1)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면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법 제9조①).
- 2)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법 제9조②).

**나. 규정취지**

하도급거래에 있어 위탁내용에 따른 목적물의 완성 및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목적물 수령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검사기준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시기를 확정하도록 한 것이다.

## 다. 적용요건

### 1) 검사기준의 결정 방법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2) 검사결과와 통지 의무

#### 가)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 나) 통지의무의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 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라)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